#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의 안 번 호 2607

2021.9.7.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

# 1. 제안경위

○ 2021. 8. 11. 임만균 의원 발의 (2021. 8. 18. 회부)

# 2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2013년 제정·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음.

반면 근거 법령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은 시·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·도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.

이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,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치법

규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.

# 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규정함 (안 제3조제1호의2 신설)
- 종전의 모호한 규정이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(안 제2조 등)
-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

# 4. 검토의견

-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(붙임1) 서울시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운데,
  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(이하, 위원회, 붙임2·3)의 심의·의결사항을 보완하고, 위원 해촉 및 기피·회피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, 조례 전반적으로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- 좀 더 살펴보면, 상위법에 기존의 기본계획·실시계획 외에 종합 계획이 신설되어 위원회 심의·의결에 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이 추가된 사항과('17.4.개정, '17.10.시행)¹), 종전의 '사업지구'가 '지적재조사지구'로 용어 개정된 사항을('19.12. 개정. '20.6. 시

<sup>1)</sup> 정부는(국토교통부)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, 서울시는 종합계획을, 자치구는 실 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게 되며, 이와 관련된 사안은 중앙·서울시·자치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되어 있음(붙임3).

- 행) 반영하고(붙임4)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 법제처 기준을 토대로 위원의 해촉·기피·회피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안으로서,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음.
- 다만, 이 조례가 제정된('13.10.)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,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, 입법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며 조례의 정확성 및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입법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.

담 당 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
연 락 처	02-2180-8206
이 메일 rienrien@seoul.go.kr	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	제2조(설치)
<u>"시"이</u> 라 한다)의 지적재조사사	<u>"入"</u>
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	
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	
(이하 <u>"시장"</u> 라 한다) 소속으로	<u>"시장"이</u>
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	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-
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	제3조(기능)
의 사항을 심의・의결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
	별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서울
	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
	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<u>지적재조사사업지구</u> 의 지정	2. <u>지적재조사지구</u>
및 변경	
3. ~ 4. (생 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제4조제3	제5조(위원의 임기) ①
항에 따라 위촉된 <u>위원 중 공무</u>	
<u>원이 아닌 위원</u> 의 임기는 2년으	
로 하고, 임명된 <u>당연직 위원</u> 의	위원
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	
기간으로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	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

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 이 위촉해지 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제6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(생 략)

② 심의 · 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 나 공정한 심의 • 의결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의 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- 1.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
- 2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
- 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 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 한 경우

① (현행과 같음)

2	 	
	 <u> 있는</u>	
	 	위원회어

<u>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그 위원----- 기피 신청--</u> ---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 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

- ③ 위원은 제1항 <u>또는 제2항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·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 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  - ② (생략)

제8조(회의) ① (생략)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<u>통지</u>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</u>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(생 략)
-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 및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<u>작성</u> ·비치하여야 한다.
- 제9조(간사 등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<u>두</u> <u>되</u>,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(과장) 으로 <u>하고</u>, 위원장이 지명한 위

③ 각 호의 어느
하나
<u>회피하여야 한다</u> .
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
<u>업무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(현행과
같음)
②
<u>통보</u>
<u>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</u>
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.
③ (현행과 같음)
4
<u>작성</u>
<u>하여 갖추어 두어야</u>
세9소(산사 중) ①
<u>-1</u>
한다.
<u>u-1</u> .

여하지 못한다.

- <u>촉위원 중 1명을 실행 간사로</u> <u>둘 수 있다</u>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1. (생략)
- 2. 심의안건 및 <u>회의록</u> 작성・ 보존
- 3. (생략)
- 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<u>의견을 청취할</u>수 있다.
  - ② (생략)
- 제11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, 관계인 및 전문가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 무와 <u>직접</u>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- 제12조(운영세칙) 이 <u>장에서 규정</u> 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②
 1. (현행과 같음) 2 <u>회의록의</u>
 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
그 의견
<u>을 들을</u>
② (현행과 같음)   제11조(수당 등)
<u>위원</u> 범위에서 수당과 여
<u>判</u>
<u>직접적으로</u>
<u>.</u>
제12조(운영세칙) <u>조례에서 규</u> 정한 사항 이외

## <붙임 1> 관련 법규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제29조(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) ① 시·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(이하 "시·도 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있다.

- ② 시·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1.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
- 1의2. 시·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- 2.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
- 3. 시·군·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
- 4.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시·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⑤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해당 시·도의 3급 이상 공무원
- 2. 판사:검사 또는 변호사
- 3.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.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
- ⑥ 시·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⑦ 시·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그 밖에 시·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 <붙임 2>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 (자료: 토지관리과)

□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주요정책 심의 의결

○ 위원회 구성요건 (10명 이내, 위촉직 8명)	○ 위원회 기능 (심의·의결)	
- 당연직(2명) : 시장(위원장), 3급 이상 공무원	-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	
- 위촉직(8명)	- 시・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	
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	-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	
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	-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	
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	-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	
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		
갖춘 사람 		

# □ 최근 4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현황

- '18년 : 2회 3건

연번	회차	안 건 명	심의일자	심의결과
1	1차	은평구 신사제4차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	2월 12일	사업지구 지정
2	1차	성북구 성북동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업기간 조정	2월 12일	사업기간 조정
3	2차	은평구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	9월 05일	사업지구 지정

# - '19년 : 1회 1건

연번	회차	안 건 명	심의일자	심의결과
1	1차	성북구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	9월 03일	사업지구 지정

- '20년 : 개최실적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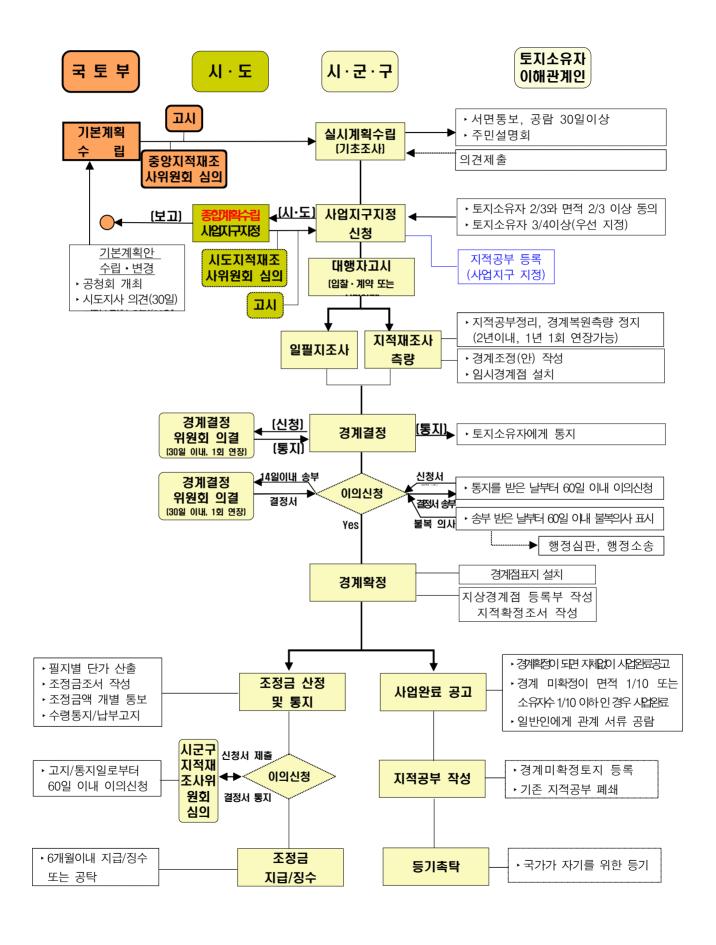
- '21년 : 1회 2건

연번	회차	안 건 명	심의일자	심의결과
1	1차	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('21~30)(안) 확정	6월 10일	종합계획 승인
2	1차	강서구 화곡제1지적재조사지구 지정	6월 10일	사업지구 지정

<붙임 3> 지적재조사 관련계획 및 심의사항 (자료: 토지관리과)

	중앙정부(국토부)	서울시	자치구
	기본계획 수립	종합계획 수립	실시계획 수립
	· 지적재조사사업 기본방향	·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세부기준	·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
	·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	·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·지	·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
	·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	적소관청별 사업량	·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, 면적
	집행계획	·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	·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
	·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시·도별	추산액	및 기간
	배분 계획	·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	·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
	·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	청별 배분 계획	·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
	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	·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	· 지적재조사지구의 현황
수립	· 디지털 지적(地籍)의 운영·관리에	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	•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
계획	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	·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	한 세부계획
	·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	보에 관한 사항	·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
	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 개발	· 그 밖에 시·도의 지적재조사	계획
	·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	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·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
	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		른 홍보
	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항		·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지적재
			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
			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			사항
	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	지적재조사위원회	지적재조사위원회
	·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	·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	·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
	· 관계 법령의 제정·개정 및 제	· 시·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	정리의 허용 여부
위원회	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	·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변경	· 지목의 변경
구면의 주요	·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	· 시·군·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	· 조정금의 산정
심의·	치는 사항	우선순위 조정	·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
의결		·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	·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
사항		치는 사항	치는 사항
			경계결정위원회
			· 경계의 결정
			·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
# ※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



## <붙임 4> 상위법 개정 관련

####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는 다음과 같다.

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 시된 지구를 말한다.

####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 [법률 제16812호, 2019. 12. 10.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.

3. "사업지구"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 3. "지적재조사지구"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정 ·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.

###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[법률 제13796호, 2016. 1. 19., 타법개정]

###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[법률 제14800호, 2017. 4. 18., 일부개정]

<신 설>

- 제4조의2(시·도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 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(이 하 "시·도종합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야 한다.
  - 1.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
  - 2.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·지적소관청별 사업량
  - 3.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
  - 4.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
  - 5.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
  - 6.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 항
  - 7. 그 밖에 시·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
- 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·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·도 지적재

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·도종합계획 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시·도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 도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⑥ 시·도지사는 시·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 요하면 변경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6항에 따 라 시·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·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 · 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 통 지하여야 한다.
- ⑨ 시·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, 작성 방법, 그 밖에 시 · 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#### 제29조(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)

② 시·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 ② 시·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 의결한다.

#### <신 설>

#### 제29조(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)

의결한다.

1의2. 시·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